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57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안 제50조의9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헌승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3. 21.

다. 회 부 일 : 2025. 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이하 “스팸”이라 함)를 전송·게시하려는 자와 그 전송의 매개가 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을 위반한 스팸 전송(이하 “불법스팸”이라 함)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에 비해 전송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스팸을 전송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스팸 전송 행위를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하며, 불법스팸 전송 관련 민관 상설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제50조의10 신설 및 제75조의2 전단).

Ⅲ. 검토의견

1.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안 제50조의9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50조의9 신설).
 -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¹⁾
- 방송통신위원회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공유하고 관련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고성정보전송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50조의10 신설).
- 제50조의8²⁾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1) 각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2)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음(안 제75조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50조의9(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을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

현행	개정안
	금을 징수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	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0조의10(광고성정보전송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공유하고 관련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u>광고성정보전송협의체</u>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성정보전송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2조제1항제2호·제2호의2----- ----- ----- ----- -----

현행	개정안
액을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 ----- -----.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게시하려는 자와 그 전송의 매개가 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³⁾.
 - 이는 과도한 스팸 전송의 경우 수신자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팸 전송이 불법도박·불법대출 등을 유도하는 등 불법행위의 관문으로 기능하여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런데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의무를 위반한 스팸 전송(“불법스팸”)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2021~2024년도 불법스팸 신고·탐지건수>

(단위: 천건)

연 도	2021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건 수	34,550	28,310	28,180	26,810	110,340	206,510	226,800	159,517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3)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된 규정은 참고자료 참조

- 이에 개정안은 불법스팸과 관련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스팸 전송 관련 대책 협의 등을 위하여 광고성정보전송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불법행위를 위한 스팸 전송으로 획득한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스팸을 근절하려는 내용임.

□ 과징금의 부과(안 제50조의9 신설)

-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상의 제재를 말함.
- 정보통신망법은 스팸 전송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에 대한 신고·등록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과징금은 의무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 불법스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으로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에 비해 전송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통해 위반행위로 획득한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타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별로 과징금 부과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과징금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스팸 관련 의무위반이 정보통신망법상 유일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됨.
 - 그런데 개정안에 따른 위반행위 중에는 그로 인해 의무자가 획득하는 이익이 경미한 경우도 존재하므로⁴⁾ 스팸 관련 의무위반 일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과징금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 각각의 위반행위로 획득한 이익이 정보통신망법상 타 위반행위로 획득한 이익에 비해 그 규모나 환수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스팸 관련 의무규정>

근거조문	의무자	의무 내용	벌칙
제50조 제1항	스팸 전송자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는 스팸 전송 금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0조 제2항		수신자의 수신거부 및 사전동의 철회 시 스팸 전송 금지	
제50조 제3항		야간(21시~익일8시) 스팸 전송 시 수신자의 별도 사전 동의	
제50조 제4항		전송자의 명칭·연락처 등 표시의무	
제50조 제5항		다음 행위의 금지 - 수신자의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회피·방해 - 숫자 등을 조합하여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 - 스팸 전송 목적의 전화번호·이메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4) 가령 스팸을 전송하면서 전송자의 명칭이나 연락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현행 제50조 제4항 위반) 이로 인해 전송자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근거조문	의무자	의무 내용	벌칙
		자동 등록 - 전송자의 신원·전송 출처 은폐 - 스팸 전송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 유도	
제50조 제6항		수신자의 수신거부·철회 시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0조 제7항		수신자의 수신동의·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의사표시에 대한 처리결과 고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0조 제8항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 확인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0조의3	스팸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	(스팸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
제50조의4 제4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역무의 제공 거부·취약점 개선 등 필요한 조치 강구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0조의5		이용자의 동의 없는 스팸 노출 프로그램 및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설치 금지	
제50조의7 제1항	스팸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는 스팸 게시 금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0조의7 제2항		운영자·관리자의 게시거부 및 사전 동의 철회 시 스팸 게시 금지	
제50조의8	스팸 전송자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둘째,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과징금 부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는바⁵⁾,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수단으로서 국민에게 부담을 가하는 규정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이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임.
- 그런데 개정안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 중 제50조의4 제4항⁶⁾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해태하여야 과징금 부과 가능한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보임.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필요한 조치에 대한 안내서’에 따르면, 역무 제공 거부와 정보통신망·서비스의 취약점 개선은 필요한 조치의 예시로, 필요한 조치에는 ① 타법에서 요구하는 스팸 관련 조치, ②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노력, ③ 사업자 간 자율규제 조치 등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음.

5)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6)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구분	내용
역무제공 거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
정보통신망 취약점 개선	1) 번호 변작과 관련한 의무사항 이행 및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은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웹팩스 사업자가 웹팩스 전송 및 부가역무를 제공하고자 할 때 원발신번호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3) 모니터링 및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서비스 취약점 개선	1)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여 다른 명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KAIT에서 운영하는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4) 다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상호접속 협정 또는 망 연동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5)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사실 확인 및 외부 감독기관의 불법스팸 전송 사실에 대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차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6) 이메일 스팸 발송 시도에 대한 전송 차단을 하지 않는 경우 7) 서비스 이용 고객에 대한 신원을 명확하게 관리하지 않는 경우 8) 부정 사용자(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그 외 필요한 조치	1) 타법에서 요구하는 스팸 관련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2)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객관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자간 자율 규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필요한 조치에 대한 안내서’, 2015.8.)

- 따라서 각 필요한 조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 대상이 되는 의무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의 예측가능성,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관리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과도하므로 제50조의3 위반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SK텔레콤(주)은 개정안에 따른 과징금이 스팸 전송과 관련된 모든 조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범자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을 위법성의 정도가 높은 제50조의8 위반으로 한정하고, 최근 스팸 유형의 다양화를 고려할 때 제50조의8의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기준과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주)케이티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전기통신사업법」의 과징금과 같이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고, 위반행위별로 경중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제50조의 사전동의 및 거부 처리 등 의무의 경우 업무처리상의 과실이나 오류 등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이미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도한 제재로 관련

시장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 제50조의4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주)LG유플러스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나, 과징금 도입 및 기준 설정 등에 있어서는 신중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의 금전제재를 중복적으로 부과하게 되어 수범자 입장에서 사실상 이중 처벌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과징금은 제재의 실효성 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또한 제50조 위반의 경우 업무처리상 단순 과실이나 오류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제50조의4 위반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불법스팸을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발송하는 제3자에 대하여 간접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위반사항을 스스로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는 점, 제50조의4에 따른 의무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역무제공의무⁷⁾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경우 사적 계약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의무범위

7)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및 처벌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 인포뱅크(주)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이 어려우므로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주)다우기술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산정의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산정 방식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광고성정보전송협의체의 구성·운영(안 제50조의10 신설)

-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계 기관,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고성정보전송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스팸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도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24.11.)」에 따른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에서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관계 부처 및 민간사업자 간 협력 방안을 논의 중임⁸⁾⁹⁾.
 - 해당 협의체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소속 정부위원 9인과, 이동통신사업자, 문자중계사업자, 전문기관 등이 포함되는 민간위원 21인으로 구성됨.

8) 관계부처합동, ‘정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2024.11.27.

9) 관계부처합동, ‘관계부처 및 민간 사업자, 불법스팸 공동 대응을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 2024.12.19.

-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성정보전송협의체는 시장 상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율적,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SK텔레콤(주)은 민관협의체는 유연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사안에 따라 필요한 관계자 간 구체적인 실무를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법률에 강제하기보다는 행정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고, 협의체 구성·운영은 예산, 인력, 시간 등의 부담을 수반하므로 의무화하는 경우 민관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주)LG유플러스는 스팸 정책은 발생하는 이슈에 대하여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률에 따른 상시조직 설치에 예산, 인력, 시간 등의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몰수·추징(안 제75조의2)

- ‘몰수’란 범죄의 반복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이고,
‘추징’이란 몰수하여야 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말함.

○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관한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에 대해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 광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 다만 몰수는 징역형, 벌금형과 마찬가지로 형의 일종으로, 몰수 및 추징에 대해서는 「형법」 제48조 및 제49조에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¹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중대범죄’에 포함하고,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등에 대해서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¹⁾¹²⁾.

10)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의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 따라서 현행법에 의해서도 불법행위 관련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임의적 몰수를 개별법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¹³⁾.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로 취득한 금품 또는 이익의 몰수·추징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경찰청은 불법스팸 등의 전송에 따른 범죄수익을 박탈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개정안과 같이 몰수·추징의 대상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SK텔레콤(주)은 불법스팸으로 인한 수익을 몰수·추징하여 불법스팸 발송의 근본적인 동기를 제거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불법스팸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동법 개정안¹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12)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 위반은 장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법 제72조 제1항 제2호의 2)로서 '중대범죄'에 포함됨

13) 다만, 「형법」은 임의적 몰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필요적 몰수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입법례와 같이 개별법상 별칙으로 규정하여야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14) 의안번호 제2203706호(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제2204539호(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참고: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규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자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를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를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행위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행위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행위
--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 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신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서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50조의4(정보 전송 의무 제공 등의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의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의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의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의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 사실을 그 의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의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

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송차단, 신고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기통신역무가 제50조를 위반하여 발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면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발·보급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 의사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의3.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문 의 처

02)6788-5230